



“한국의 창을 열고 세계를 누벼라!”

SKIS 교육통신

Singapore Korean International School

발행번호 :
행정팀(학부모선관위)-1

대 상 : 전교생

문 의 처 : 6741-0778

공고 제2024-2호

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

「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」 제2조에 의하여 2024학년도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입후보 등록

가. 자격 : 본교 학부모로서 아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 등록 가능

- 1)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- 2) 정당의 당원인 자
- 3) 타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자

☞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 사유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나. 입후보자 등록기간 : **2024. 3. 8.(금) ~ 3. 14.(목) 12:00까지**

다. 입후보자 등록방법 :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사무국 및 학교메일(info@skis.kr)

라. 구비서류 : 입후보 등록서 1부(등록서는 사무국 비치 및 학교홈페이지 탑재), 사진(3×4cm) 1매

2. 위원선거

가. 일 시 : 2024. 3. 20.(수) 학부모총회일

나. 장 소 :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강당

다. 선출인원 : **학부모위원 4명(유·초·중·고 학부모 각 1명)**

라. 선출방법 : 직접선거(※ 입후보자 수가 위원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)

3. 당선자 발표 : 2024. 3. 20.(수) 선거일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(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)

2024년 3월 7일

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